

# 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,940,726,119	118,221,784
일반회계	3,658,406,922	109,752,208
특별회계	282,319,197	8,469,576
기타특별회계	282,319,197	8,469,576
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	14,199,908	425,99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04,771,213	6,143,136
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	16,279,799	488,394
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19,150,328	574,51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5,280,801	158,424
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	22,637,148	679,114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,065,50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과 그에따른 도비부담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